

『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
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12월 3일

나. 발 의 자 : 김상조, 권기만, 김복자, 안장환, 안주찬
양진오, 윤영철, 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 의원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2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2월 18일

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상조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4.10.31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2015년 ~ 2018년도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“2,016,000원”을 “2,092,000원”으로 조정(안 제3조 제1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류 시 건

□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.

□ 주요 내용은

-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“2,016,000원”을 “2,092,000원”으로 조정하였음.(안 제3조 제1항)

□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4. 10. 31 「구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」에서 심의의결한 2015년~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2016년도 월정수당을 2015년도 월정수당에 ‘15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3.8% 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것으로서
-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,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현행 2,016,000원에서 2,092,000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